

# 대 전 고 등 법 원

## 제 3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06나9161 보험금  
원고, 항소인 김●● (●●-●●)  
대전 중구 문화2동●●  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●●, 모 김●●  
피고,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 
대표이사 신은철  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 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6가단16946 판결  
변 론 종 결 2007. 5. 23.  
판 결 선 고 2007. 6. 5.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03. 11. 30.부터 2020. 11. 30.까지 매년 11. 30.에 금 5,000,000원씩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, 이를 인용한다.

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이●●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최●●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정●● \_\_\_\_\_